

의안번호	제 57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연철흙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11월 9일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연철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7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9일

발의자 : 연철흙,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전원표, 황규철,
이옥규

1. 제안이유

충청북도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북의 경제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다.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및 경영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라. 도유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6조)
- 마.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시행 및 도유림의 보호 관리를 위한 보호관리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사항 규정(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라. 조례안 예고 : 2020.10. 29. ~ 2020. 11. 6.(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경제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유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 기반시설설치·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 도는 도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
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
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도유림의 이용 증진을 통한 충청북도민 삶의 질 향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유림경영계획)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종합적·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충청북도 도유림경영계획(이하 “경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영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청북도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

2. 도벌(盜伐)·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활동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등 방제활동

4. 산지 정화활동

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 감시 활동

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

7. 경계표주,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 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 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은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유림의 경영“이라 함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사용허가·교환·매수·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산림사업) ①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하 “공동사업수행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이하 “공동산림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④ <생략>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방지·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구제 등 방제활동
4.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와 임도·사방 시설의 보호 및 관리활동
5. 그 밖에 자생식물·희귀식물·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③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4.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버섯류·열매류·수액 등의 산림부산물

④ ~ ⑥ <생 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산림 경영·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의2(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이 조례안 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어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